

慶州市 美觀地區 建築條例

慶州市條例第569号

第1條(目的) 이條例는 建築法 第33條 및 同法施行令 第145條의 規定에 依하여 美觀地區내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建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서 美觀地區내의 美觀을 維持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建築制限의 区分) 美觀地區내에서의 建築制限은 다음 각号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区分하여 行한다.

1. 第2種美觀地区：商業地域으로서 土地의 利用度가 比較的 큰 区域中 道路沿辺의 떠모양인 美觀地区
2. 第3種美觀地区：觀光에 直接 必要한 道路沿辺과 市街地로 부터 觀光地 또는 史蹟地에 이르는 道路沿辺에 있는 떠모양인 美觀地区
3. 第4種美觀地区：韓國固有의 建築樣式을 保存하고 住居 및 生活環境의 美觀維持를 為하여 指定된 美觀地区
4. 第5種美觀地区：商業地域으로서 그 環境의 美觀維持를 為하여 指定된 美觀地区

第3條(用途의 制限) ① 第2種美觀地区 内에서는 다음 각号에 揭記하는 建築物 및 이와 類似한 用途의 建築物은 이를 建築할 수 없다.

1. 農水產物 都壳市場
2. 古物商
3. 傳染病院, 精神病院, 癡藥診療所, 葬儀舍, 家畜病院
4. 自動車売買所, 自動車整備所, 自動車附属品商,
5. 煉炭工場, 貯炭場
6. 製材所, 木材販売所, 木工所
7. 糧穀加工業所, 다만 製菓店을 除外한다.
8. 倉庫
9. 石物 加工工場
10. 精肉店
11. 鉄物店, 工具販売店, 乾材商
12. 洗濯所, 直接 洗濯하지 아니하는 것을 除外한다.
13. 屋外, 作業場을 갖는 建築物
14. 工場
15. 單独住宅, 다만 店舗를 兼한 住宅을 除外한다.

② 第3種美觀地区내에서는 다음 각号에 揭記하는 建築物 및 이와 類似한 用途의 建築物은 이를 建築할 수 없다.

1. 令第142條 第7項의 規定에 依한 別表7 第1項에 揭記하는 建築物
2. 第1項 第1号乃至 第14号에 揭記하는 建築物
- ③ 第4種美觀地区내에서는 다음 각号에 揭記하는 建築物 및 이와 類似한 建築物은 이를 建築할 수 없다.
1. 令第142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別表2에 揭記하는 建築物
2. 第1項 第1号乃至 第14号에 揭記하는 建築物
3. 建築物의 形態, 構造, 色彩, 衣裳 및 用途가 都市美觀上 特히 有害한 것으로서 市長이 建築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3人以上 (以下 建築家等이라 한다)의 意見을 들어 指定 公告한 建築物

4. 主된 建築物 또는 담장等을 利用하여 設置하는 부엌, 倉庫, 其他 이와 類似한 附屬 建築物

④ 第5種美觀地区 内에서는 第1項第1号乃至 第14号에 揭記한 建築物 및 이와 類似한 用途의 建築物은 이를 建築할 수 없다.

⑤ 佛國寺周邊에 指定한 第5種美觀地区 (以下 佛國寺 第5種美觀地区라 한다)内에서는 別途1에서 指定하는 街区別 用途에 適合한 建築物이 아니면 이를 建築할 수 없다.

第4條(垈地面積의 最少限度) 美觀地区내의 垈地面積의 最少限度는 다음 각号에 揭記하는 面積으로 한다. 다만, 美觀地区 指定以前에 이미 分割된 垈地로서 市長이 周囲의 美觀에 調和될 수 있는 設計를 指定한 境遇에는 垈地面積을 각각 該當最少面積의 10分之 7까지로 할 수 있다.

1. 第2種美觀地区 : 150平方미터
2. 第3種美觀地区 : 200平方미터
3. 第4種美觀地区 : 200平方미터
4. 第5種美觀地区 : 150平方미터

第5條(垈地의 最少幅) 美觀地区내 垈地의 最少幅 (建築物이 있는 部分의 幅을 말한다)은 다음 각号에 揭記하는 面積으로 한다.

記하는 幅以上이어야 한다. 다만 美觀地区指定以前에 이미 分割된 垦地로서 市長이 周囲의 美觀에 調和될 수 있는 設計를 指定한 境遇에는 각各 該當 最少幅의 10分之 7까지로 할 수 있다.

1. 第2種美觀地区 : 10미터
2. 第3種美觀地区 : 12미터
3. 第4種美觀地区 : 10미터
4. 第5種美觀地区 : 10미터

第6條(垈地안의 空地) ① 美觀地区내의 建築物 (담장 및 類似한 것을 除外한다.)은 建築線 (住宅의 境遇에 限한다.) 및 垦地境界線으로부터 다음表에 揭記하는 距離以上을 뛰어 建築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이 周囲의 美觀에 調和될 수 있는 設計를 지정한 境遇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建築線으로부터의 距離(미터)	垈地境界線으로부터의 距離(미터)
第2種美觀地区		1.0
第3種美觀地区	3.0	1.5
第4種美觀地区	3.0	1.5
第5種美觀地区	2.0	1.5

② 佛國寺 等 5種美觀地区내에 指定된 用途別 街区內의 건폐율은 다음 각号에 揭記하는 比率을 超過할 수 없다.

1. 住居 : 旅館 및 호텔 街口 : 10分之 5
2. 店舗 : 料食 및 業務街口 : 10分之 7
3. 料食 및 旅館街区
 - 가. 旅館用途의 建築物 : 10분之 5
 - 나. 料食業用途의 建築物 : 10분之 7

第7條(建築物의 높이) ① 美觀地区내의 建築物의 높이는 다음 각号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1. 第2種美觀地区 : 二層以上 다만 注油所 其他 用途上 不可避한 建築物은 建築家等의 意見을 들어 周囲의 美觀維持에 支障이 없다고 市長이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2. 第3種美觀地区 : 1層 다만 市長이 周囲의 美觀에 調和될 수 있는 設計를 指定한 境遇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3. 第4種美觀地区 : 1層으로서 7미터 以下, 다만 市長이 周囲의 美觀에 調和될 수 있는 設計를 指定한 境遇에는 2層 以下로서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4. 第5種美觀地区 : 2層以上

② 第3種 및 第4種 美觀地区내의 1層 建築物은 그 높이를 5.4미터 以上 7미터 以下로 처마 높이를 3미터 以上 3.9미터 以下로 하여야 한다.

③ 第1項第4号의 規定에 不拘하고 佛國寺 第5種 美觀地区내의 建築物은 別途 2에서 指定하는 街区別 높이를 超過할 수 없다. 이 境遇 1層 建築物에 對하여는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 第3種美觀地区로서 當該道路의 沿邊이 道路보다 심히 낮아 建築物部分이 道路面 以下에 있음으로서 그 道路에서의 展望에 有利하다고 認定하여 市長이 指定告示한 区域내의 建築物의 높이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該 道路面의 높이를 超過할 수 없다.

第8條(建築物의 規模) ① 美觀地区내의 單独住宅의 建築面積은 60平方미터 以上이어야 한다.

② 美觀地区내의 住宅以外의 建築物은 다음表에 揭記하는 規模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美觀地区指定以前에 이미 分割된 垦地上의 建築物로서 市長이 周囲美觀에 調和될 수 있는 設計를 指定한 境遇에는 当該 数值의 10분之 7까지로 할 수 있다.

区 分	建築物의 앞면길이 (미터)	建築物의 옆면길이 (미터)
第2種美觀地区	10	6
第3種美觀地区	12	-
第4種美觀地区	-	-
第5種美觀地区	10	-

③ 第2種 및 第5種美觀地区내의 1棟의 建築物의 建築面積은 層數에 따라 다음 規模以上이어야 한다. 다만 單独住宅의 境遇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層 数	建築面積(平方미터)
3 層 以 下	100
4 - 5 層	200
5 - 8 層	300

第9條(附屬建築物의 規模) 美觀地区내의 建築物에 附屬된 建築物의 建築面積은 그 主된 建築物의 1의 壁과 이에 对向하는 垦地境界線과의 사이에 있는 垦地部分의 面積의 8분之 1을 超過할 수 없다.

第10條(建築物의 모양) ① 美觀地区내의 建築物의 平面은 直四角形, 正四角形, 圓形 또는 橢圓形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이 建築家等의 意見을 들어 그 地区의 美觀維持에 障碍가 되지 아니한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② 美觀地区내의 建築物 屋上層에서는 建築物의 運營上 必要한 建築物部分 以外의 것은 築造할 수 없다.

③ 美觀地区내에서 建築物의 屋塔의 意匠은 建築物其他部分의 意匠에 使用한 材料와 類似한 材料로 하여 建築物의 全體와 調和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이 建築家等의 意見을 들어 그 地区의 美觀維持에 障碍가 되지 아니한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④ 市長은 美觀地区내에서 그 地区의 美觀維持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建築物의 樣式, 構造, 形態 및 色彩等을 規則으로 制限할 수 있다.

第11條(建築物의 附帶施設等) ① 美觀地區内에서는 洗濯物의 乾燥台, 장독台, 其他 이와 類似한 施設物은 道路에서 보이게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美觀地區内에서는 굴뚝 換氣設備 其他 이와 類似한 것은 建築物의 前面 또는 側面部分에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市長은 美觀地區内에서 그 地區의 美觀維持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담장 및 大門의 높이,

樣式, 構造 및 形態를 規則으로 制限할 수 있다.

④ 市長은 美觀地區内에서 그 地區의 美觀維持에 障碍가 된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遮綿施設의 設置, 交替 또는 撤去를 命할 수 있다.

第12條(既存建築物) 美觀地區의 指定以前의 既存 建築物로서 美觀地區의 指定에 依하여 그 建築制限에 適

合하지 아니하게 된 것 (從前의 制限에 関한 規定에 違背된 既存 建築物은 除外한다)에 對하여는 令第142條 第10項의 規定을 準用하되 이 境遇에는 同項의 規定中 2分之 1을 5分之 1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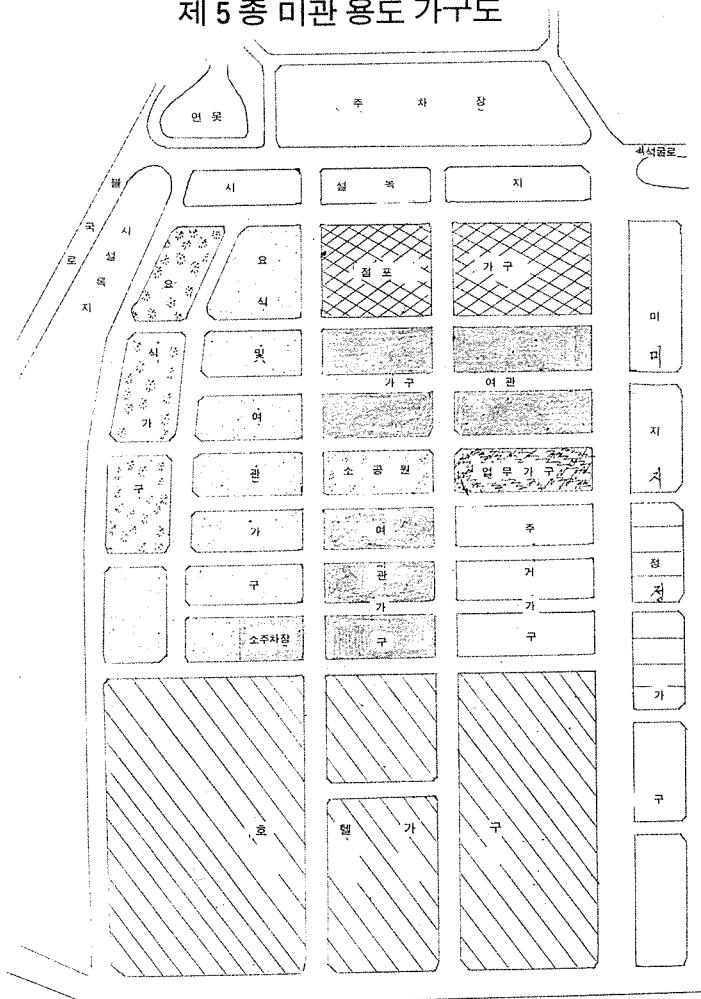
第13條(規則) 이 條例의 施行上 必要한 事項은 市長은 規則으로 定한다.

附 則

(1) (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経過措置) 이 條例 施行當時 從前의 制限에 関한 規定에 違背되지 않은 既存 建築物로서 이 條例에 依한 建築制限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既存 建築物에 對하여는 第1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 5 종 미관 용도 가구도



제 5 조 미관지구 총별 가구도

